대상포진약물

GABAPENTIN 경구제 (품명: 뉴론틴 등)
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 - 아래 -

- 2. 신경병성 통증(Neuropathic pain)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간질(Epilepsy):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

- 다음 -
- 1) Thioctic acid(또는 α-lipoic acid)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Gabapentin 경구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

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사.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(환상통, 단단통)

차.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

PREGABALIN 경구제 (품명: 리리카캡슐 등)

다.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(Spinal cord injury)

바.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(Post spinal surgery syndrome)

가.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(Diabetic neuropathy)

- - 2)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(예: Pregabalin 경구제, Duloxetine 경구제 등)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.

나. 대상포진 후 신경통(Post-herpetic neuralgia) : Lidocaine 패취제(품명: 리도탑카타플라스마)와 병용투여 시

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

가) Thioctic acid(또는 α-lipoic acid)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

나)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(예: Gabapentin 경구제, Duloxetine 경구제 등)간의 병용투여는

2) 대상포진 후 신경통 Lidocaine 패취제(품명: 리도탑패취)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

5)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(「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
pain Scale)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,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

* 시행일: 2015.8.1 * 종전고시:고시 제2013-127호(2013.9.1) * 변경사유:교과서, 가이드라인, 임상연구문헌 등에서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성 통증에 동 약제가 유의한 통증감소 효과를 보이며, Gabapentin에 비하여 우수한

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Gabapentin 경구제(품명 : 뉴론틴

- 라. 복합부위 통증증후군(CRPS,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) 마. 다발성 경화증(Multiple sclerosis), 파브리병 (Fabry's disease)
- 아. 삼차신경통(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)
- 자.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(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「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」참조 인정)
- * 시행일: 2013.9.1. * 종전고시: 고시 제2009-59호(2009.4.1.) * 변경사유: 용어정비

가. 간질(Epilepsy):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

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토록 함.

인정하지 아니함

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

- 아 래 -

- 다음 -

- 아 래 -

나. 신경병성 통증

- 1)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
 - 3)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(Spinal cord injury)

4) 복합부위 통증증후군(CRPS;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)

- 의 'Ⅲ.암성통증치료제' 범위 내에서 인정)
- 다. 섬유근육통(Fibromyalgia)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.

6)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(Post spinal surgery syndrome)

- 1)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(TCA: Amitriptyline, Nortriptyline 등)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(Cyclobenzaprine 등)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
- ※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영향척도(FIQ;Fibromyalgia

2) Duloxetine(품명: 심발타캡슐)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.

- Impact Questionnaire) 점수가 40점 이상이며,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(pain VAS; pain Visual Analog
- 고려해야 함.
- LIDOCAINE 패취제 (품명: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)

효과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인정함.

캅셀 등) 또는 Pregabalin 경구제(품명: 리리카캅셀)와 병용투여 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.

FAMCICLOVIR 250MG 경구제 (품명 : 팜비어정 250MG 등)

* 시행일: 2013.9.1. * 종전고시: 고시 제2011-163호(2012.1.1.)

○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- 1.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유사효능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 투여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래 -
- 아 래 -

○ 대상포진 감염증과 재발성인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

○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Antiviral agent(Acyclovir)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, 투여가 어려

2. 허가사항 범위(효능 · 효과 등)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운 경우 * 시행일: 2013.9.1. * 종전고시: 고시 제2009-73호(2009.4.24.)